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29호
2019년2월14일(목)

여수시보

시정지표

- 1. 시민공감감동시정
- 1. 균형있는상생경제
- 1. 사람중심나눔복지
- 1. 품격있는문화관광
- 1. 살기좋은은정주환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9-40호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 및 해안수변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9-41호 돌산 무슬목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5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35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19-40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7
- 여수시 공고 제2019-410호 2019년도 제1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마이스산업 분야) 임용시행 시행계획 공고 /86
- 여수시 공고 제2019-41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100
- 여수시 공고 제2019-415호 무선산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토지 보상협의계획 열람공고 /157
- 여수시 미평동 공고 제2019-15호 미평동 20통장 모집 공고 /167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2019-701호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69
- 여수시 규칙 제2019-702호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72

회								
관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 및 해안 수변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 및 해안수변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2.14.

여 수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가. 제한지역

1) 1구역: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국도77호선 백야 등대)

2) 2구역: 해안 수변축(소호 디오션리조트~화양 용주, 화양 대서이~구미, 돌산 월전포~안골전, 돌산 무술목~소율)

나. 지정면적: 1구역 1,791,346㎡, 2구역 3,805,938㎡

다. 제한사유: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과 해안 수변축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난개발 사전방지를 위하여 경관지구 지정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라. 제한범위: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행위와 주요 난개발 건축행위

마. 제한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제2호에 따른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한되는 용도별 건축물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중 양어시설 및 부화장, 종묘배양시설은 제외한다.)
- 자원순환관련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바. 허용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제한행위 이외의 행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경우 및 건축심의·교통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사. 제한기간: 2019. 2.14. ~ 2021. 2.13. (고시일로부터 2년간)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돌산 무슬목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돌산 무슬목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2.14.

여 수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가. 제한지역: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번지 일원(무슬목 목장용지)

나. 지정면적: 709,292㎡

다. 제한사유: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진행 될 경우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훼손 등이 우려되며, 도시기본계획 등이 수립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라. 제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취

마. 허용행위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경우

2)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바.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여서동 237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 나. 명 칭: 여문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
3. 준공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844m²(도로 159, 공원 685)
 - 나. 규 모: L=75m, B=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2018. 6. 1.(실시계획인가고시일)
 - 나. 공사완료일: 2019. 1. 3.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도로과(☎061-659-4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규정에 따라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여 수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시행 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남산동 일원
-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금액 : 금699,971천원(부가세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 2019년 3월중(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또는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측량 분야 요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4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에서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반조사 분야 요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상기(① ~ ③)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②~③항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함.) 구성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⑤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이 부여되며,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도급시에는 도내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⑥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시 지역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측량	지질조사	비 고
79.78%	7.57%	12.65%	설계예산서 비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평가서 제출 장소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다.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19. 2. 28(목).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당일에 한하며, 팩스,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서 포함)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내용(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한글파일)을 담은 USB 1EA)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수 서류(자격증 사본등) 1부
 -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3. 입찰참가업체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18-303호)」에 의거 작성한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이상을 득점한 업체중 상위 10개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 심사후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나라장터 입찰참가대상자 등록으로 같음하며,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다. 본 용역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입력문제 등으로 적용이 곤란함으로서 입찰 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라.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시는 등기부등본상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이 공고문,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사.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수도과(☎061-659-4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대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2019. 01.

 여수시

목 차

제1장 과업명	1
제2장 과업의 목적	1
제3장 과업의 개요	1
제4장 일 반 사 항	3
제5장 과업의 주요내용	11

1. 과업명

○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대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돌산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3.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일원

3.2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공종	과업기간 (12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본조사	■													
2. 현장조사		■	■											
- 측량조사		■												
- 토질조사			■											
3. 기본및실시설계			■	■	■	■								
- 관로설계(육상)			■	■	■									
- 관로설계(해상)				■	■	■								
4. 해역이용협의			■	■	■	■	■	■	■	■	■	■	■	
- 협의서 작성			■	■	■	■	■							
- 해역이용협의								■	■	■	■	■	■	

3.3 과업 범위

본 과업은 여수시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뤄지도록 공사 집행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3.3.1 현지조사

1) 측량조사

○ 관로노선 측량: L=1.4km

○ 멀티빔수심 측량 및 지층탐사 1식

2) 지반조사(필요시 설계내역서를 변경하여 실시한다)

○ 육상 (NX): 7공(추진기지 및 도달 기지 등)

○ 해상 (NX): 1공(해저관로구간)

3) 지장물 조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3.3.2 기본 및 실시설계

○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공급 용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검토 및 배수관로(해저관로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 배수관로: L=1.9km (해저관로 포함),

3.3.3 관련 인허가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및 기타 인허가서 작성 및 협의

4.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여수시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여수시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4.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3 용어의 정의

4.3.1 발 주 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여수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4.3.2 수 급 인

“수급인”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하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3.용어의 정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3.3 감 독 자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여수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3.4 설계도서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제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3.5 설계도면

“설계도면”이란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은 물량 산출 및 내역 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4.3.6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4.3.7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3.8 설계기준서

“설계기준서”는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 공종을 대상으로 당해 설계수행 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4.3.9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이란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4.3.10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공사원가산정 기준서“란 공사분석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설계도서,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공사비 분석 수행 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4.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5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자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6 수급인의 책임

4.6.1 책임한계

- 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6.2 관계기관 협의

-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를 하 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6.3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종별 세부잔여 설계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6.4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6.5 재 조 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4.6.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반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6.7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6.8 제출물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7 하도급의 범위

4.7.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및 견적업무
-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2) 계약상대자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상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4.8 참여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적격심사관련)를 본 용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퇴직, 질병 등)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9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수급인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2. 가.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10 보안 및 비밀유지

-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4)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5)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 6)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7)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8)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4.7.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4.11 협의와 조정

- 1)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 등을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 3)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과업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별도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5) 용역진행 중 각종심의, 개발계획변경 및 각종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설계보완이 필요한 경우 용역 작업내용을 수정·변경·보완하여야 한다.

4.12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착수계
- 2) 책임기술자 선임계
- 3)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4) 과업수행계획서
-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15 과업수행기간변경(중지요청 등)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 3)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발주청에서 변경, 중지 지시할 수 있음)

4.16 설계변경

- 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문, 검토가 관계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측량 등 현지조사 결과 또는 방침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한 범위 내에 과업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용역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기간과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18 설계도서의 보완 등

설계완료 후 공사시행 중에 수급인의 부실설계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 설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보완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조항 및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용역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과업의 주요내용

5.1 현지조사

5.1.1 일반사항

- 1) 현지조사는 과업착수 전 현지조사 내용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한다.
- 2) 세부적인 현지조사 시행이전에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설계기본방안을 수립한 후 세부조사를 시행 한다

5.1.2 측량조사

- 1) 측량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측량의 기준점이나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표석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관로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 예정지에 대하여는 노선측량, 지형현황 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하 매설물 등 지장물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종·평면도 또는 횡단도에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 3)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4) 관로노선 측량의 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면과 위치를 따라 추가 측점을 설치하고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계획과 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시

5.1.3 멀티빔 수심측량 및 지층탐사

1) 멀티빔 음향측심

- 멀티빔 음향측심기 (Multi-beam Echo Sounder ; MBES)를 사용하여, 해저면을 3차원적으로 파악한다.
- 멀티빔 음향측심기 작업은 최소 15%의 중첩률을 가지도록 한다.
- 멀티빔 음향측심기의 성능은 표 1에 표시하는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표-1 멀티빔음향측심기의 성능>

항 목	성 능
주 파 수	200 kHz 이상
빔 각 도	1.5°x 1.5°이하
빔 수	80개 이상
분 해 능	1.5cm 이하
초당 최대 평수	30개 이상

- 멀티빔 에코사운더 운영시 모션센서 및 자이로 콤파스를 반드시 연동해야 하며 아래 표 2에 표시하는 해상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표-2 모션센서 및 자이로 콤파스의 성능>

구 분	해상력	비 고
모션센서	Heave : $\pm 1\text{cm}$ Roll : $\pm 0.01^\circ$ Pitch : $\pm 0.01^\circ$	
자이로콤파스	$\pm 0.01^\circ$	

- 송수파기는 선체의 무게중심 또는 측면에 설치하여 각 장치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멀티빔 음향측심기의 수중음파속도의 변화 등에 의한 조위경정은 음속측정기에 의해 보정되어야 하며, 수시로 음속을 측정하여 음측 수심이 재보정되어야 한다.
- 측심치의 조위경정은 원칙적으로 조위관측치(평균해수면)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인근 검조소의 조위관측 또는 조석예보치를 보정(조시차 및 조고비 적용)하여 조위경정 할 수도 있다.
- 멀티빔 음향측심기의 측선간격은 수심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중첩률이 15%이상 되어야 하며, 취득된 자료 중 양 측면의 각도를 15°정도 절삭 후 양질의 데이터를 획득하여야 한다.
- 탐사위치의 측정은 DGPS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량선의 유도를 위하여 위성 항법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멀티빔 음향측심기 시스템은 DGPS, 자이로센서(Gyro Sensor), 모션센서(Motion Sensor), 음속측정기 등 부가적인 장치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모션센서는 송수파기에 수직으로 부착하여 선체의 운동 변화에 따른 보정값을 모션센서에서 인식하여 여러 오차(Roll, Pitch, Heave)를 보정한 자료가 획득할 수 있도록 모션센서를 부착, 운용하여야 하며, 성능은 Heave센서의 정확도가 10Cm이하이어야 하며, Roll/Pitch센서는 정확도가 $\pm 0.1^\circ$ 이하이어야 한다.
- 자이로센서 성능은 Static err 0.1° , Dynamic err 0.4° 이하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여야 한다.
- 음속측정기(SVP)를 이용하여 조사수심까지 음속측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조사선에서 설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반드시 조사구역 부근에서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탐사작업은 가급적 정온(파고 0.5m 이내)한 날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탐사선의 운항속도는 7~8노트 정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 측량선상에서 측심위치 측량은 DGPS(기지국 및 이동국 설치에 의한 실시간 위치 측정장치)에 의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 기준점에 대한 수준측량 성과는 국립지리원의 측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표고와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기준으로 한 표고를 같이 측정하여 수준 기준점 성과에 육상표고와 해상표고의 차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수중 지층탐사

- 해저 지층 탐사기를 사용하여, 해저종단면을 파악한다.
- 탐사간격은 10m로 하되, 탐사 심도와 조사지역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특이지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한다.
- 해저 지층 탐사기의 성능은 표 3에 표시하는 성능이상이어야 하며, 주파수 2~7 kHz 이하의 첩(chirp)파형 방식, 송수파기의 빔 지향각은 45°이하이며 송수파기의 출력은 음파가 충분히 깊게 투과할 수 있도록 1.5 kW 이상이어야 한다.

<표-3 수중 지층탐사기의 성능>

항 목	성 능
가 정 음 속 도	1,500m/sec
주 파 수	2 - 7 kHz
송수파기의 지향각	반감반각 8°이하
송수파기 출력	1.5 kW 이상
최 소 눈 금	0.2 m 이하
기 록 정 도	$\pm(0.1 + \text{수심} \times 10^{-3}) \text{ m}$

- 탐사위치의 측정은 DGPS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량선의 유도를 위하여 위성 항법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탐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탐사선의 속도는 4노트 정도로 하고, 조류가 강한 곳에서는가급적 조류가 약한 시기를 택하여 행하여야 한다.
- 탐사선의 방향은 조사해역 상황과 해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지층단면의 분석은 측심기록 및 지층탐사기록을 기초로 해저질, 기타 시추자료 등을 참작하여 기반암 및 퇴적층의 단면을 묘사하여야 한다.
- 지층탐사기록의 독취는 정밀탐사의 경우 10초이내 그 외에는 1분 이내로 독취해야 하며, 송수파기 깊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 기반암의 심도는 수심과 퇴적층의 두께의 합으로 얻어 수심과 동일한 기준면으로 부터의 깊이로 나타내어야 한다.
- 취득된 지층탐사 자료는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이득치 변화(gain), 시간 이득치 변화(Time varying gain), 중첩(stacking), 뮤팅(muting)의 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5.1.4 지질조사

1) 일반조사

- 본 지질조사는 관로추진을 위한 추진 및 도달기지, 해저관로 설계에 필요한 제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 본 지질조사는 KS, ASTM 및 관련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현장조사 시 자격을 갖춘 토질 및 지질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시추 및 토질조사

- 수급자는 상황의 변동이 있을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및 ‘폐공’ 등에 대한 검토와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의 상황의 변동이 있을시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실내시험을 포함하여 설계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추작업 및 현장시험 광경
 - 코아상자 내부광경 (심도 및 코아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 조사성과는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보고서 (토질공학적 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 시추주상도
 - 시추단면도 및 각종 토질단면도
 - 현장시험 성과계산서
 - 사진첩
- 본 조사 중 토층 심도, 현장시험, 실내 시험 등의 수량은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3) 현장시험

- 매 1.0m 혹은 지층 변화시마다 KSF-2318에 규정한 대로 표준관입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시추공을 이용한 현장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실내시험

- 채취된 시료들 중에서 토사 및 암석의 대표적인 시료를 선정하여 기본 물성 시험(함수량,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 일축압축 등)을 실시한다.

5.1.5 지장물 및 용지보상조사

- 1) 지장물 조사는 통신,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입수하여 공사 시 지장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2) 토지는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 구거, 국유지, 하천 등으로 구분하되 토지 대장, 지적도 등을 대조 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소유자 현실 지목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한다.
- 3)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구체사항(도시계획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용지도를 지적도 및 측량도면에 의해 작성하되 용지조서와 일치하도록 한다.

5.2 기본 및 실시설계

5.2.1 공통사항

- 1) 각종 기준은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제반 지방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표준품셈, 당시 설계기준 및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수도협회 발행 상수도 시설기준 또는 제반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적용하되,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각종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건설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설계한다.
- 3) 관매설 토피는 지역의 동결심도, 상부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매설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4) 도시공간 등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의 공사계획은 소음, 진동, 분진 등 적절한 공해방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5) 모든 시설물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이어야 한다.

5.2.2 기초현황조사

- 1) 과업대상지역의 일반현황
- 2) 기존 상수도시설(마을상수도)의 운영현황
- 3) 토지이용 및 관련계획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기 연구자료 및 타계획 수립 또는 시행 시 조사된 자료
- 4) 관련 상위계획(수도정비 기본계획, 각종 개발계획 등)
-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5.2.3 용수수요조사 및 계획

- 1)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등의 상위관련계획을 기준으로 계획목표년도 및 계획급수구역, 장래인구계획 등의 계획지표를 검토한다.
- 2) 인구계획과 과거인구변화추이 등을 분석하여 목표연도별 계획급수인구를 추정하고 장래 용수수요량을 검토한다.
- 3)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래 용수수급계획을 수립한다.
- 4) 최적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관로의 용량을 검토한다.

- 5) 최근의 급수구역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해저관로의 최적관경을 선정한다.
- 6) 해저관로노선에 대한 적정 위치여부를 검토하고, 시설물 배치계획(추진공법을 위한 추진구 및 도달구), 수리계산, 상부시설 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5.2.4 토 공

- 1) 관로 및 구조물의 토공 및 정지계획 등은 각종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 토공 이동량이 최소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절·성토구배 및 비탈면 처리 방법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절토, 성토의 구배는 절·성토 높이, 토질, 지하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구조물 주변의 절·성토부 처리방법은 구조물의 특성 및 기능적인 면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4)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 예상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장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절토 및 성토 사면안정을 위한 비탈보호공법을 제시하여야한다.
- 5) 주요 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시설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상세도면 및 수량 산출근거, 공법비교, 공사시행이 가능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2.5. 구조설계

- 1)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수밀 콘크리트 시공 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방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구조물 설계 시 내진검토 및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수밀구조물의 시공 이음부나 신축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대책을 검토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경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시에는 간격, 배치 등을 설계도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중요 시설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시행한다.

- 기초방식에 따른 설계조건 제시
- 설계이론의 설정 및 설계 점검내용
- 전단균열, 처짐, 정착길이 등의 부위검토, 방법 등 제시
- 구조세목의 검토항목 및 방법 제시
- 하중의 재하방법, 하중의 조합방법 제시
- 지진하중을 고려한 내진설계반영
- 실시설계를 위한 구조설계 기준 제시

5.2.6. 배수관로

1)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중점 검토하여야 한다.

- 용수수요량 및 공급방안 검토
- 기존 시설 및 계획시설의 수리 및 용량 검토
- 기존시설과 계획시설의 연계 계획
- 가압펌프장계획 및 송수관로 노선계획
- 수격압검토 및 방지시설 검토
- 시설물 위치선정 계획
- 계획시설물 운영계획
- 관로 노선선정 및 종·횡단계획
- 관경결정 및 관중선정
- 관로 부속시설(밸브 등) 위치, 규격 및 형식 선정
- 기타 부대시설의 계획
- 폐기물 처리계획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5.2.7. 해저관로

- 1) 육상조건과 해저구간의 지형적, 수리학적 조건을 고려하여 관중을 검토·선정 하여야한다.
- 2) 해저관로를 위한 추진공법은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토록 한다.
- 3) 해저관로의 경우 매설하는 방안과 부설하는 방안은 검토하여야 하며, 공법선정 시 해저관로 연장, 수심, 조류속 등의 해상조건, 매설단면, 굴착공법,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한다.

- 4) 공법선정이전에 기본설계 단계에서 추진공법의 외경 및 내경을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관내 송수관로 유지관리(관 파손 및 교체 등))을 고려하여 외경 결정을 한 후, 추진공법사에 외경 및 내경을 사전에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 5) 또한, 실제 설계 구경과 계약내역서상의 공사비 추정을 위한 구경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내역변경을 시행하도록 한다.
- 6)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용지확보, 유지관리, 장래도로 확장계획, 지하매설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가급적 직선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7) 관의 내압 및 외압결정, 라이닝 도복방법의 선정 및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종을 결정하여야 한다.
- 8)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위치에 각종 제수밸브, 공기밸브, 배출수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2.8. 건축시설

- 1)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기능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중시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에너지 절약, 재해대책 및 제반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관광지인 점을 감안하여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 2) 주요 건축물은 수리계통,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물간의 기능적 연관성과 부지의 형상 및 기초, 지반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3) 건축설계는 건축법상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전기사업법, 소방법, 상수도 시설기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계산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상수도시설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전체적인 건축물은 각 건물의 특성을 살리면서 부지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외관은 밝고 산뜻한 기분을 주고 일반인에게 친숙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설계한다.
- 5)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장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로 각 건축물의 내부 기능 및 공간구성 등은 각 분야별로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 모든 기능을 만족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설물의 보호, 유지관리 및 운전 등을 위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6) 유지관리를 위한 중추적인 시설은 건축물이므로 수리계통,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물간의 기능적 연관성과 조직 및 운영에 최적 장소를 선택하고 최소한의 동선이 되도록 배치한다.
- 7) 평면설계는 동선계획, 근접시설 상호간의 영향, 각 공간의 환경 및 피난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8) 입면설계는 부지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조화, 형태, 기능, 유지관리 및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 9) 단면설계는 기기에 대한 필요 단면과 각 설비간의 수리계통,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설계한다.
- 10) 건물 중 진동이 발생하는 곳은 내화 및 방음구조, 방음설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11) 구조설계
 -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강도설계법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에 의하여 내진설계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및 반영여부를 구조계산서에 명기하고 미반영시는 의견을 명시한다.
 - 설계조건에 적합하면서 성능면을 중시하고 또한 경제적인 구조로 설계한다.
 - 본 상수도시설은 공공시설이란 점을 고려하여 안전율이 높은 구조체여야 한다.
 - 골조는 단순 명쾌한 형태로 하고 장기 하중에 유해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재 및 골조의 강도 및 강성을 확보토록 한다.
- 12) 내부재료마감
 - 재료마감은 유지관리 및 청소가 편리하도록 하고 실별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미관이 좋고 내화, 내구성 및 경제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 소음, 흡음, 차음, 반사, 단열 및 결로방지 등을 고려하여 각 실의 용도와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재료를 선택한다.
 - 창호 및 위생설비는 방충, 마모 및 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한다.
- 13) 기 타
 - 소방설비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을 설계한다.
 - 난방설비는 기기 보호용과 상용으로 구분하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5.2.9. 기계설비

- 1) 본 상수도시설의 기계설비는 펌프설비, 전동밸브설비 등으로 구성한다.
- 2) 기종선정은 기기의 효율, 기능 및 유지관리의 난이도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3) 설치되는 각종 기계설비는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 4) 기계설비는 자동화에 적합하도록 토목, 전기, 계장 등 타공종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 5)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내부식성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6) 펌프설비의 제어방식은 부하, 가동빈도, 펌프특성,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운전조작방식은 단독 및 연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주요부속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검토하고 수위조절이 필요한 시설은 수위계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2.10. 전기설비

- 1) 수전계획은 공사계획 기간별 및 계획완성시의 전력 및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2) 수전방식에 대한 사항은 설비의 운영(건설, 운전,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3) 설비형식은 현장의 주위상황, 조건에 대한 고려, 장래의 증설에 대한 확장성, 안정성, 유지관리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고려 선정하여야 한다.
- 4) 주요 부하의 제어방식은 부하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 운전제어 방식과 자동운전제어 방식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5) 종합 감시제어 방식은 시스템을 집중 또는 분산제어의 이해득실의 사항을 비교 검토하고, 감시반, 조작데스크 형식, 조작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6) 제어전원방식에 대한 것은 전원분할, 무정전 공급방식, 전압 안정대책에 대한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 7) 설비기기는 각 회로의 채용기종에 대한 채용이유, 타 방식과의 비교 검토된 후 최적의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 8) 기기배치도(간선계통 포함)는 각 설비별 전기기기 배치, 주요 간선경로(배선 방식)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9) 기기외형도 주요기기, 배전반, 감시반, 조작반, 현장조작반으로 구분 작성되어야 한다.
- 10) 배선도 및 배선 상세도는 간선, 동력, 제어, 접지, 건축부대설비 등으로 나누어 작성되어야 한다.
- 11) 흐름도 작성은 감시제어방법, 계측개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증별 공사한계가 인터페이스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12) 시설공사와 주요자재 구매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3) 설비별 용량산정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 등에 채택근거 제시
 - 변압기 용량계산서(특고, 고압, 저압조명 등 부하계산서)
 - 케이블 사이즈 계산서 <허용전류(연속 및 단락), 전압강하>
 - 조도계산서

5.2.11. 계측제어 및 통신설비

- 1) 본 사업은 급수대상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송수시설과의 연계 운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각 시설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2) 계장설비는 공정의 계측제어의 자동화 및 집중관리화를 함으로써 조작의 용이성, 획일성, 확실성 및 안정성 등을 확보한다.
- 3) 전공정의 일부분만에 대한 고도의 계장화를 지양하고 시설전체가 관련되도록 계획한다.
- 4) 시설의 가동상황의 파악 및 적절한 제어에 의한 운전의 안정성을 기한다.
- 5) 제어에 있어서 계측량, 변화량을 기준으로 한 제어 루우프를 구성하거나, 이상시 긴급성, 빈번한 조작성 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등 제어의 방식과 중요성에 따라 기기의 구성을 결정한다.
- 6) 계측, 감시의 항목과 점수는 각종의 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간략화하고 정보처리에 적합해야 한다.

- 7) 시설전체를 대상으로 제작자의 국내외 실적이나 동향 또는 기술수준 등을 조사하여 무리 없이 계획하여야 한다.
- 8) 계장설비
- 계장설비의 시스템 구성, 배치, 조작, 감시제어방안은 신뢰성, 안정성, 경제성, 기능성, 장래 확장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SYSTEM 기능은 감시제어 대상에 대한 원격 및 현장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수처리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양적관리 (수위, 유량, 압력 등)에 필요한 감시제어 사항 및 검출기 검토
 - 질적관리에 필요한 감시제어사항 및 검출기 검토
 - 계장설비 조작 계통도
 - 사업장 원격제어에 대한 검토
 - 출입자 감시 방안

5.2.12. 기타 수도관련 규정 및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발행)에 준용한다.

5.2.13. 설계도서 작성

-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장설비의 건설에 대한 사업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 2)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명칭, 축척, 방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다.
-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 4) 기본 및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장,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 5)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전기 및 계장, 기계,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5.3 사업집행계획 수립

5.3.1. 사업비 산정

- 1) 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및 예비비 등을 주요 공정별로 세분 산정한 다.
- 2) 공사수량 개선 및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교부 제정 표준품셈, 가격정보(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5.3.2. 년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시행을 위한 주요 공정별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5.4 해역이용협의

5.4.1 일반사항

-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 2) 해역이용협의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4) 해역이용협의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6) 해역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7) 협의서 작성 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 8)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9)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5.4.2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수행 주요 내용

- 환경현황조사(해양수질, 해양퇴적물 및 해양생태계)
-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2) 환경현황 조사

- 환경질
- 해양생태계

3)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 개황조사 및 각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한다.

○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공사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 각 예측항목에 대한 예측방법과 예측결과를 자세히 기술한다.
- 개발이 인접해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왔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효과를 검토한다.

○ 저감방안

-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실시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5.5 각종 인·허가(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5.5.1 환경성검토

- 1) 사전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 및 법 25조의 2 제2항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 2) 각종 계획 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협의 대상일경우는 지방환경청과 법령에 맞는 협의시기에 협의를 수행하여야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협의대상이 아닐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서에 그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고 본 보고서는 성과품에 포함하여 납품토록 한다.
- 4) 지방환경청 협의 이외에도 환경성 검토와 관련되는 사항은 담당자가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하고 협의내용은 검토하여 설계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보고서 작성은 관련규정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5.2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별표1항등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관계기관의장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될 사항은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관련 협의문서는 보고서에 수록하여 추후 공사시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5.3 경관성 검토

- 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절의 계획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경관검토서를 작성토록한다.
- 2) 경관검토서는 국내의 경관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한다.

5.5.4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수도사업변경인가, 건축인가

- 1) 시설물 최종설계준공 시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인가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 여수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5.6 성과품 작성

5.6.1 사업집행 계획수립

1) 사업비 산정

사업비 산정은 공사비, 보상비, 예비비 등 주요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산정하되 송수관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공통시설에 대한 사업 주체별 분담 공사비를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2)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계획을 위하여 공종별로 연차별,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5.6.2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면은 관로부설 표준단면과 계획노선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2) 기본설계 설계도서 내에는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및 각종계산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다.

3) 도면은 복사지 A3 용지에 작성하며 명칭, 축척, 방향표시, 범례, 작성자, 확인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이 별도 필요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4) 설계도는 공사 계획을 포함하며 노선계획과 표준단면 등을 실시설계를 통하여 기본설계의 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한다.

5)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정부발행의 물가자료 및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의 각종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분석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7) 각종 계산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감독관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작성하여, CD와 함께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은 필요시 감독자가 지정한 KS규격의 AUTO CAD로 작성하며, 명칭, 축척, 방향표시, 범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5.6.3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 1)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굴착시의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 되도록 제시한다.

5.6.4 기타사항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계약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 조정한다.

5.6.5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 2)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 5)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자료 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5.7 성과품의 제출

- 1) 수급인은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10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3) 성과품 목록 및 납품부수

품 명	부 수	비 고
1)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10부	
2) 해역이용협의 등 협의서류	5부(필요시 추가)	
3) 측량성과 1식	1식	
4) 토질조사 성과 1식	1식	
5) 기타 관련자료	1식	
6) 위의 모든 성과품은 별도로 전산 파일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CD-ROM)	1식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 본 기준은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18-303호)관련 상수도분야의 작성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 수 시
[상 수 도 과]

목 차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I. 총 관	1
II. 분야별 평가기준	2
III. 일반사항	12
IV.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4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참고서식 >
II.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참고서식 >	
가. 표 지 (양식 1)	25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확약서 (양식 2)	26
다. 과업 참여기술자 조직 (양식 3)	27
라.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양식 4)	28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5)	31
바. 신용도 (양식 6)	32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34
아. 업무중복도 (양식 8)	36
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양식 9)	37
차.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양식 10)	38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양식 11)	41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I. 총 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참여기술자		50.0		
	사업책임기술자	18.0		
	등급 경력 실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0 5.0 6.0 3.0	절대평가 “ “ 상대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 최근10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분야별책임기술자	22.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8.0 9.0		
	분야별참여기술자	8.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2.0 3.0 3.0		
	교육훈련, 전차용역	2.0	절대평가	
	교육훈련 전차용역	1.0 1.0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용역 참여실적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업자	15.0	절대평가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벌점	7.0		• 대상 :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개발실적	2.0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실제 활용한 실적
	투자실적	10.0		
	활용실적	3.0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잔여과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사업책임기술자	4.0		
	분야별책임기술자	6.0		
바.가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절대평가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에 따라 가점 부여

II.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등급	18	‘건설기술자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4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이하	
		점수							4.0	3.0	2.0		
	경력	5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발행 기술자 경력 증명서의 확인자료 증명서) 으로 평가										
			구 분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실 적	6 (9)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 필요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용역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용역 100% 폐수(하수)처리장 용역 60%(단, 마을하수처리장은 제외)										
			구 분	20건이상	20건미만 17건이상	17건미만 14건이상	14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점 수	6.0 (9.0)	5.4 (8.1)	4.8 (7.2)	4.2 (6.3)	3.6 (5.4)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 생략시 괄호의 점수 적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생략(해당점수 실적점수 합산)						
분야별 책임 기술 자	등 급	22	.각 분야별 기술자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 점수의 합 / 참여기술자의 수						
			5	자 격 : 해당분야 기술자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5.0		4.0	3.0	2.0			
	경 력	8	.사업책임기술자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계	8.0	7.2	6.4	5.6	4.8	
	실 적	9	.사업책임기술자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자 등급	8	.분야별 기술자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 점수의 합 / 참여기술자의 수					
		2	.자 격 : 해당분야 기술자					
	경력		구 분	고급이상	중 급	초급이하		
			점 수	2.0	1.6	1.2		
		3	.사업책임기술자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실 적	3	.사업책임기술자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교육훈련	2						
		1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 차 용 역 수 행 실 적	1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전차용역 책임기술자가 금차용역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 전차용역 분야책임기술자가 금차용역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해당용역의 중요 1개분야로 제한하며 공고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 분야, 특별한 경우 변경 가능)					
			구 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책임기술자	0.5	0.4	0.3		
			분 야 별 책임기술자	0.5	0.4	0.3		
			- 점수 = 배점×(참여기간/과업기간)×100					
			* 2개 이상 용역을 통합한 경우 지분을 적용 평가 - 점수 x 용역비율(해당기술자 참여용역 비율/전체 용역)					
			※ 실시설계로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0”점 처리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용역업자	15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용역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용역 100% 폐수(하수)처리장 용역 60%(단, 마을하수처리장은 제외)							
			실 적	7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 적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금 액	7	실 적	50억원 이상	50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0억원이상	30억원미만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전 차 용 역 수 행 실적	1	.참여업체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용역완료후 10년이상			
			점 수	1.0	0.8	0.6	0			
- 점수 = 배점×전차용역참여지분율×당해용역참여지분율×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2개이상 용역을 통합한 경우 지분율 적용 평가 - 점수 x 용역비율(해당용역 비율/전체 용역) ※ 실시설계로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0”점 처리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별점	10							
		7	.용역업자 :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건설기술자 :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누계평균 별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 점	-0.2	-0.5	-1.0	-2.0	-3.0	-5.0	
	재 정 상 태 건 실 도	3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 사 채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2-이상	A2- 미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 업 신 용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15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배 점 (건당)	경 과 기 간 가 중 치					
				5년 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신 기 술	1.0	-	-	-			
		특 허	0.6	100%	80%	60%			
	실 용 신 안	0.3	100%	8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투 자 실 적	10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 수	10	9	8	7	6
	활 용 실 적	3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중첩도		10	<p>·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용역의 과업기간 합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용역이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용역,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은 미합산한다. <p>· 각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아래 예시 3개항 중 1개항을 선택하여 공고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평가기준은 동일하여야 함. <p>(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①</th> <th>②</th> <th>③</th> <th>④</th> <th>⑤</th> </tr> </thead> <tbody> <tr> <td>I</td> <td>150% 미만</td> <td>150~200% 미만</td> <td>200~250% 미만</td> <td>250~300% 미만</td> <td>300% 이상</td> </tr> <tr> <td>II</td> <td>200% 미만</td> <td>200~300% 미만</td> <td>300~400% 미만</td> <td>400~500% 미만</td> <td>500% 이상</td> </tr> <tr> <td>III</td> <td>300% 미만</td> <td>300~350% 미만</td> <td>350~400% 미만</td> <td>400~450% 미만</td> <td>450%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①	②	③	④	⑤	I	150% 미만	150~200% 미만	200~250% 미만	250~300% 미만	300% 이상	II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III	300% 미만	300~350% 미만	350~400% 미만	400~450% 미만	450% 이상
		구 분	①	②	③	④	⑤																				
I	150% 미만	150~200% 미만	200~250% 미만	250~300% 미만	300% 이상																						
II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III	300% 미만	300~350% 미만	350~400% 미만	400~450% 미만	450% 이상																						
사업책임기술자	4	<p>· 평 가 :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각 1인</p> <p>· 방 법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p> <p>※ 용역중복기간 산정은 당해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용역의 용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p> <p>ex) 당해용역 24개월, 수행중인용역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용역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p>																									
분야별 책임기술자	6	<p>·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200% 미만</th> <th>200~300% 미만</th> <th>300~400% 미만</th> <th>400~500% 미만</th> <th>50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200% 미만</th> <th>200~300% 미만</th> <th>300~400% 미만</th> <th>400~500% 미만</th> <th>50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구 분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구 분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구 분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구 분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 가점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첨부 1>

책임기술자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Ⅲ.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67호(2017. 12. 20)]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다만, 입찰공고일 직전 1개월 이내 준공용역은 발주청 경력확인증명서도 인정하며, 이 경우 2014. 5.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은 반드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용역 수행 중 등재한 경우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전차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 경력·실적, 용역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 나.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해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단, 전체 백분율의 $\pm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각각의 공동도급자는 기술자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 공동도급시 지역용역회사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용역회사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 중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참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평가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당됨)

(예시) 평가인원 11명, A사 70%, B사 30%

- A사(60%~80%) = 6.6명~8.8명 ≒ 7명~9명

- A사(20%~40%) = 2.2명~4.4명 ≒ 2명~4명

8.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나 설계보상대상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여,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발주청의 확인 별도 첨부 - 미첨부시 인정 안됨)

9. 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자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평가대상 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점수에 적용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90일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90일이상 180일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180일 이상 : 1.0

10.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가능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2.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평가항목에 한함)

IV.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단,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상대평가)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자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text{개월}/12\text{개월}) \times 1\text{건}$ 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만 인정한다. 단 반드시 당해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참여기술자 실적, 업체 유사용역 실적평가지 '14.5.23. 이후 계약 용역 중 실제 준공 이 되지 않은 용역을 준공된 것으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평가항목(사업책임 18점, 분야별 책임 22점, 분야별 참여 8점, 용역업자 15점)을 “0점” 처리한다

6.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전차용역은 참여기술자 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 실적 적용범위를 적용하지 않음 (○○분야 설계 실적평가지 2억원 이상만 인정하는 경우 전단계 용역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전차로 인정)

7.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1.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9.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40% 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2.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 가.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참고사항】

건설기술자의 범위 (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3) 건축시공 5) 건축품질관리	2) 건축기계설비 4) 실내건축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3) 가스	2) 소방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3) 건설마케팅	2) 건설기획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을 %)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외건설협회장(인)	
발주처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발주처					
공사명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여수시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적격 용역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과업 개요

1) 과업내용

-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남산동 일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비 : 699,97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격 : A4(10절)
- 지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 공판
- 제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6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4부는 별권으로 작성)

3) 제출장소 : 여수시 상수도과

라.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마. 참여 및 평가인원

1)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 1인(상하수도)

.분야별 기술자 : 4인

- 분야별 인원 : 2인(책임기술자 각1인 포함)

- 해 당 분 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기계 또는 전기전자

2) 평가대상 기술자 : 9인

.사업책임기술자 :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기계 또는 전기전자

.분야별참여기술자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기계 또는 전기전자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도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I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참고서식 >

가. 표 지 - 양식 1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수 립 용 역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서		20 . . .
○ (주) ○ ○ ○ ○ ○ ○ ○ ○ ○ ○ ○ ○ (주) ○		(주) ○○○○○○○○○ ○○○○○○○○○ (주)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참여확약서 - 양식 2

본인은 여수시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발주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첨 부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공동수급협정서 1부.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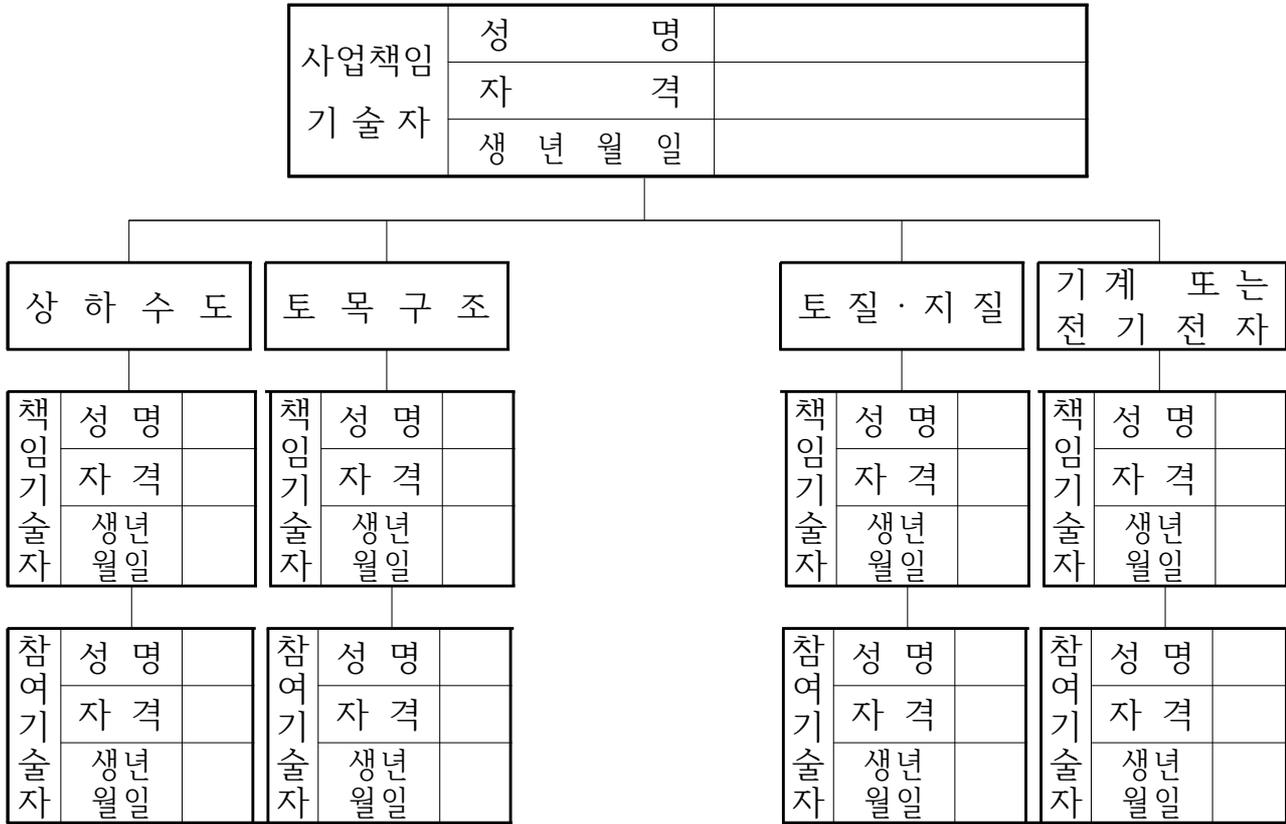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여수시청 귀하

다. 과업 참여기술자 조직 - 양식 3



* 비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명단 미제출

o 참여기술자의 범위 및 자격

- . 사업책임기술자 (1인) : 상하수도
- . 분야별 책임기술자 (4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전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4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전자

- ※ 1.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전체 백분율의 ±10% 포인 트 범위내에서 조정(공동도급자는 기술자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2. 참여지분율에 따른 참여인원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조정
3. 공동도급시 지역용역회사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용역회사 중에서 반드시 평 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 중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참 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분야 별 책임기술자 평가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당됨)

라.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 양식 4

1) 개인별 총괄표 (양식 4-1)

구 분	성명	연령	최종학력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경 력 (년수)	실 적 (건수)
					자격증	등록번호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참여 기술자									

(주)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사본을 첨부
- .경력란에는 책임기술자별로 양식 4-2-①항의 해당분야 경력기간 기재
- .실적란은 양식 4-2-②항의 최근 10년간 수행한 해당용역의 건수를 기재
- .상기 난에 기재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본 평가서 내용대로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양식 4-2)

○ ○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졸 업 년 월 일			기 술 자 등 급		
	자격증(분야 및 종류)			등록번호		취 득 일		
	① 해 당 분 야 경 력		(년 월)	② 해당용역 실적건수		건		
실 적 사 항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참여기간	비 율 (참여기간/ 계약기간)	발주청	비 고
				년월 ~ 년월(일)	년월 ~ 년월(일))			

(주)

- . 개인별로 작성, 연차순으로 기재하되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사항은 평가기준에 의거 총경력 ①을 명기하되, 연월일을 중복 기재하지 말 것
- . 해당용역 참여건수②는 평가기준에 의거 단일 용역사업 중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종류별로 명기
- . 기술자 자격취득 증빙서류 첨부
- . 참여기간은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을 명기
- . 참여기술자는 용역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 . 실적 증명서 첨부

3)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양식 4-3)

참여기술자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주)	교육훈련기관	업체명

(주)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4) 참여기술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양식 4-4)

분야	성명	용역명	용역 개요	참여기간 (단위:월)	전차용역 참여형태	기술자 등급	비고

(주)

-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된 실적으로 해당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자명단 원본 첨부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 양식 5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등

(단위 : 백만원)

연 도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 주 청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계	건						

2) 실시설계

(단위 : 백만원)

연 도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 주 청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계	건						

(주)

- . 평가기준에 의거 준공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 기관, 전문기관 발행 준공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실적증명서 첨부
- . 공동도급인 경우는 준공금액란에 총 금액()과 해당회사 지분율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해당회사의 금액을 합산 집계
 -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 하도급 : 발주처,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처 승인서 사본 첨부
- . 턴키, 대안입찰, 민간투자사업의 설계용역 수행실적 인정
 - 「낙찰금액×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효율」범위내
 - 단, 해당용역업체의 참여지분율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낙찰금액, 참여지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바. 신 용 도 - 양식 6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벌점 (양식 6-1)

○ 용역업자

회 사 명	제재기관	제재사유	용 역 명	입찰참가 제한기간 (개월)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비 고
계						

○ 참여기술자

참 여 기 술 자			용 역 명	제재기관	제재사유	기술자격 정지기간 (개월)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분야	성 명	참여기간					
계							

○ 벌점

구 분	회 사 명 (기술자명)	누계평균 벌점	비고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 과징금이 있을 경우 별도 표시

2)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6-2)

○ 업체현황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주)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양식 7

1) 개발실적

구 분	건 명	기술종류	내 용	유효기간	등록권자	참여지분율
신 기 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주)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만 인정(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2)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① 20	② 20	③ 20	평 균 ①+②+③/3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주) .최근 3년간 건설부문의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3) 활용실적

구 분	활용실적 명칭	활용건수 (단위 : 건)	활용금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신 기술				
특 허				
실용신안				

(주) 지정된 기관의 건설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신기술 : 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 특허 및 실용신안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기관

아. 업무중복도 -

양식 8

구 분	성 명	용역명	사업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중첩기간 (개월)	발주처	사업참여기간		
								참여 분야	성명	참여 기간
사업책임 기술자										

(주)

- .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
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 기재
-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대상용역 전체 기재
- . 계약서, 착수(착공)계 등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실수 또는 고의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양식 9

회사명	신규 고용인원(명)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지분율(%)	비 고

(주)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필요

-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19. . .

※ 업체명 표기 금지

1. 기술능력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 업 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 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양식 11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합계		100			
가. 참여기술자		50.0			
	사업책임기술자	18.0	작성제외		
	등급	4.0			
	경력	5.0			
	실적	6.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			
	분야별책임기술자	22.0			
	등급	5.0			
	경력	8.0			
	실적	9.0			
	분야별참여기술자	8.0			
	등급	2.0			
	경력	3.0			
	실적	3.0			
	교육훈련, 전차용역	2.0			
	교육훈련	1.0			
	전차용역	1.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업자	15.0			
다. 신용도		10.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벌점	7.0			
	재정상태 건실도	3.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			
	개발실적	2.0			
	투자실적 활용실적	10.0 3.0			
마. 업무중복도		10.0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4.0 6.0			
바.가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2019년도 제1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제1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4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 기간	담당직무내용	근무예정 부서
마이스 산업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1명	2년	- MICE 정책 수립 및 행사 기획 - MICE 콘텐츠 개발 및 행사 유치 - 신규 MICE 마케팅 분야 발굴 (협회 및 학회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으로 확대 등)	투자부담화과

- 사업의 필요 및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총 5년)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조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거주지 · 성별 : 제한없음
 - 연령 :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한함) 능통자 우대

■ 관련분야 실무경력 : MICE 산업(CVB* 및 컨벤션센터, 기업회의 · 인센티브관광 · 국제회의 · 전시회 등 관련 업무) 관련 근무 경력

* CVB : 국제회의, 전시, 기업행사, 다양한 이벤트 등 마이스 마케팅 전담조직

4. 보수 및 복무

○ 보수수준

임용분야	상한액	하한액	비 고
마이스 산업	52,621천원	37,373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5. 시험방법

○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서면심사)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적격성 심사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교부·접수

- 교부기간 : 2019. 2. 14. ~ 2. 28.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접수기간 : 2019. 3. 4. ~ 3. 6.(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인터넷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비고
	일 시	장 소	
2019. 3. 13.(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별도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합격자 발표 :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4.5cm) 1매(별도 제출)
- 응시수수료 : 여수시수입증지 7,000원(여수시청 민원실에서 인증)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⑥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⑦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능력 검정시험 점수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⑧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요약서 및 실적자료]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⑩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⑪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도 면접시험 실시함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처

분야	해당부서(담당팀)	문 의 처
마이스 산업	투자박람회과(MICE 유치팀)	061-659-3464

▶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처 :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 (☎ 061-659-3121)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2019년도 제1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마이스산업 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여수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주사, 보건주사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여수시수입증지란에는 응시분야 해당직급에 맞는 여수시 수입증지를 게첨

- 6·7급 7,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령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	--	----------	--	-----	--

나.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다. 우대사항

자 격 증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학력

구 분	내 용				
	학교명	입학연도	졸업연도	전 공	학 위
학력 및 전공	최종학력부터 기재	00.00(년, 월)	00.00(년, 월)		
	고등학교부터 기재				
논문, 저술, 償 등					

주요경력

부터	까지	직장명	부서명/직위	담당 업무
최종경력부터 기재	00.00(년, 월)			구체적 담당업무 또는 프로젝트 기재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격증 (업무관련)	종 류
어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 취득일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자기소개서

응시자 인적사항

○ 응시분야:	분야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경력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수상실적

수상일자	내용(훈격)	수여기관	비고

학위논문 기재 (해당자만 작성)

가. 석사논문

○ 학위수여일자:
○ 논문 제목:
○ 내용요지(10줄 이내 간략히 설명)

나. 박사논문

○ 학위수여일자:
○ 논문 제목:
○ 내용요지(10줄 이내 간략히 설명)

다. 그 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제 목	게재서 (출판사)	연구자	연 구 연월일	내용요지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여수시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여 수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여수시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시행 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진두마을 등 23개소
-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 금465,533천원(부가세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 2019년 3월중(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또는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③ 상기(① ~ ②)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②항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구성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④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이 부여되며,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도급시에는 도내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 ⑤ 측량분야는 아래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 업체 참여시 지역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구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비고
비율	74.77%	25.23%	설내역서상 비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평가서 제출 장소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다.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19. 2. 28.(목).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당일에 한하며, 팩스,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서 포함)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내용을 담은 USB 1EA)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수 서류(자격증 사본등) 1부
 -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3. 입찰참가업체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18-303호)」에 의거 작성한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득점한 업체중 상위 10개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심사후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나라장터 입찰참가대상자 등록으로 같음하며,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입력문제 등으로 적용이 곤란함으로서 입찰 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시는 등기부등본상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이 공고문,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사.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061-659-4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 설계 과업 지시서**

2019. 2.

 **여 수 시**

목 차

1. 과업의 개요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위치	1
1.4 과업의 범위	1
1.5 과업 기간	1
2. 과업의 내용	2
2.1 기초자료 수집	2
2.2 현장조사	3
2.3 실시설계	7
2.4 성과품 작성	12
3. 과업수행 일반사항	13
3.1 용역착수	13
3.2 용역기술자	13
3.3 과업수행 변경(중지요청등)	13
3.4 계약변경 조건	13
3.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등	14
3.6 각종보고	14
3.7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14
3.8 보안 및 안전사항	15
3.9 기타사항	15
4. 성과품 목록	16
5. 과업 예정공정표	16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여수시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돌산읍 진두마을 등 23개 미 급수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위치

여수시 돌산읍 진두마을 등 23개소

1.4 과업의 범위

가. 현장조사

1) 측량 조사 : 관로노선측량(L=47.5km)

나. 실시설계 : 1식

1) 관로실시설계 D30~D300mm, L=47.5km

다. 성과품 작성 : 1식

1.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2. 과업의 내용

2.1 기초자료 수집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도물 공급으로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가. 지역적 조건에 관한 사항

- 지형 및 지질
- 배수지별 급수구역 계통
- 최근 급수량(유역계량기 및 급수전 이용)

나. 관련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기본계획 등
- 각종 토지이용 계획 등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 기타 관련 계획 등

다.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료 보관기간, 자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독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 현장조사

현지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시 지하매설물 현황과 토질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 전에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 현지답사

-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 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합니다.
-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비디오)를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주요 계획에 반영합니다.

나. 급수설비 조사

- 급수설비조사는 각 가정 내 또는 개별건물 내에 설치된 급수설비현황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정리·분석하여야 합니다.
- 배수설비조사는 과업구역 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수설비현황을 촬영·제출 합니다.
- 배수설비 조사는 계량기의 설치 유무 및 재질과 설치위치, 연결관의 재질과 환경, 급수설비 정비와 개량계획 수립에 필요한 항목을 조사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 각 가정별 급수설비 거리를 실측하여 설계에 반영합니다.

다. 측량조사(분담시행)

1) 일반사항

-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법」 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합니다.
- 측량시행은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 측량도중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전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경우, 수급인은 재측량을 행하여야 하며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 관로설치와 펌프장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와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 심도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와 횡단도, 지하매설물조서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합니다(별도의 도서로도 가능)
- 수급인은 측량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와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한 후 측량에 착수합니다.
- 필요에 따라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 1/1,000(1/1,200)를 작성합니다.

2) 지형현황측량

- 선정된 시설물과 노선에 따라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하며, 지형현황측량도를 가지고 실시설계에서 종·횡단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지형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 삼각점간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고 향후 공사 시행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며, 기준점에 대한 계산부와 망구성도를 제출합니다.
- 지형현황측량의 노선 좌우 폭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행하며, 지형현황측량의 모든 성과는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합니다.

3) 종·횡단 측량

- 「공공측량 작업규정」 을 준수하고 삼각점과 수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 종단도는 1/600, 횡단도는 1/100 축척으로 폭 30m(좌·우15m)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지하 매설물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시합니다.

2.3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과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 기타 관계 법령과 설계기준,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지방상수도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내외 설계기준과 국내 수도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합니다.
- 「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시설 설치승인 등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인·허가 등 제반법규를 반영한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 각종 구조물은 자연과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합니다.
- 기계와 전기/계측제어 등의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합니다.

나. 실시설계

1) 상수관로 시설계획 검토

- 지역여건에 맞는 최적의 관로시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집된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검토하여 금회 사업에 적용해야 합니다.
- 과업대상 지역 이외에 인접한 상수도 관로 시설 계획에 대한 종합검토를 시행하여 합리적인 관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설계기준 검토와 설정

- 상수도 설계기준 특히 관로 내 적정 수압과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의 설계 수압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 최소수압 유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지역별, 배수계통 별로 명확히 하여 장래 관로의 유지관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구역별로 유입량과 유출량 등의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상수관로 용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합니다.
- 관로의 신설, 개량, 보수계획 재검토
 - ① 기존관로 조사 자료와 수돗물 사용수량 조사 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가능성, 유지관리용이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관로의 신설, 개량과 보수계획을 보완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 ② 기존관로의 활용이 가능한 관로에 대해서는 탁수 유입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급수가 가능하도록 노선별, 지점별로 보수방법을 정하고, 보수방법과 관련 설계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계획노선별, 지점별로 관로조사 자료를 토대로 개량과 신설관로의 관경을 결정합니다.
 - ④ 개량과 신설 관로는 기존 급수설비, 지장물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과 종단계획을 수립합니다.
 - ⑤ 급수 불량지역의 수압, 수량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 검토하도록 합니다.

3) 평면 및 종단설계

- 관로용량 부족에 따른 증·신설계획 관로와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 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유지관리와 조작성에 지장이 없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 경제적이고 능률과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 관로내에 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단계획과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와 자재를 사용하며, 내구성이 크고 외력이 안정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 공사시행 중 차량통행 등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소요비용, 인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와 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관로 평면도의 축척은 1/1,000, 종단도는 횡축 1/1,000, 종축 1/100으로 하며, 종·횡 단면도는 축점간 거리 20m를 표준으로 하고 변곡점 또는 필요한 지점에 추가 축점을 설정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상수도관로 설계

- 상수도관로의 관종은 수압과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 상수도관로 계획 시 누수 및 외부의 지하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수도관로 계획 시 지하수, 하천수 등 자연수의 유출입이 전혀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된 설계(공법, 자재선정 등)가 되도록 합니다.
- 제수밸브 및 상수도맨홀의 설치와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급수설비 정비

- 기 설치된 옥내 급수관로를 거쳐 상수도 관로에 연결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성과품 작성

- 감독관과 협의하여 단계별 공사시행에 따른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 과업수행의 설계기준과 참고자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표준품셈과 지침서 등을 적용합니다.
- 참고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자료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외국의 예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에도 같음)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은 조달청에서 선정 통보된 CD-ROM 저장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작된 CD-ROM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합니다.
- 시방서는 KS, ASTM, JIS, BS 등의 관련규격을 명시해야 하며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전기와 계장, 기기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는 전체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은 정부가 정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보험요율,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3. 과업수행 일반사항

3.1 용역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업무분담사항,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과 이력서, 조직표, 분야별 인원과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손해배상보증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용역기술자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자를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3.3 과업수행 변경(중지요청 등)

다음의 경우 발주청은 과업을 중지하거나 수급인은 과업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관계기관의 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 지연으로 연기가 불가피할 때
- 천재지변이나 행정처리상 중지 또는 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3.4 계약변경 조건

- 상위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동 과업에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공정이 추가 될 경우
- 과업범위의 변경 또는 계약체결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비 계상된 직접경비는 과업 준공시 정산합니다.

3.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계획서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계획내용과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6 각종보고

- 1) 월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추진내용과 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현황(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과 대책
 - 부진공정 발생시 만회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2)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주요계획과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시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3) 최종보고 : 과업완료 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7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합니다.

3.8 보안 및 안전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중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도 비밀보안 준수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대책과 보안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 및 용역결과 중에서 대외적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용역수행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의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현장조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인은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9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와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성과품 목록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비고
① 현장조사	1. 배수현황 야장과 집계표	-	1식	
② 조사측량	1. 조사측량 성과	-	1식	
	2. 용지도조서	-	1식	
③ 실시설계	1. 보고서와 부록	A4	5부	
	2. 설계도	A1	1부	
	3. 설계도(축소도면)	A3	5부	
	4. 공사시방서	A4	5부	
	5. 자재구매시방서	A4	5부	
	6. 수량산출서	A4	5부	
	7. 설계예산서	A4	5부	
	8. 단가산출서	A4	5부	
	9. 구조 및 수리계산서	A4	5부	
	10. 기타관련자료	-	1식	
④기 타	성과품 CD(USB 등)	-	1식	

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기 간 (6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자료조사	████████											
2. 현장조사		████████████████████										
3. 실시설계		████████████████████										
4. 성과품 작성					████████							
5. 관련 인·허가				████████								

「여수시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 본 기준은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18-303호)관련 상수도분야의 작성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여수시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용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 수 시
[상 수 도 과]

목 차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I. 총 관	1
II. 분야별 평가기준	2
III. 일반사항	12
IV.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4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참고서식 >
II.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참고서식 >	
가. 표 지 (양식 1)	25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확약서 (양식 2)	26
다. 과업 참여기술자 조직 (양식 3)	27
라.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양식 4)	28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5)	31
바. 신용도 (양식 6)	32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34
아. 업무중복도 (양식 8)	36
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양식 9)	37
차.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양식 10)	38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양식 11)	41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I. 총 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참여기술자		50.0		
	사업책임기술자	18.0		
	등급 경력 실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0 5.0 6.0 3.0	절대평가 “ “ 상대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 최근10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분야별책임기술자	22.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8.0 9.0		
	분야별참여기술자	8.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2.0 3.0 3.0		
	교육훈련, 전차용역	2.0	절대평가	
	교육훈련 전차용역	1.0 1.0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용역 참여실적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업자	15.0	절대평가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벌점	7.0		• 대상 :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설도	3.0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개발실적	2.0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실제 활용한 실적
	투자실적	10.0		
	활용실적	3.0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잔여과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사업책임기술자	4.0		
	분야별책임기술자	6.0		
바.가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절대평가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에 따라 가점 부여

II.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등급	18	‘건설기술자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4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이하	
		점수							4.0	3.0	2.0		
	경력	5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발행 기술자 경력 증명서의 확인자료 증명서) 으로 평가										
			구 분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실 적	6 (9)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 필요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용역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용역 100% 폐수(하수)처리장 용역 60%(단, 마을하수처리장은 제외)										
			구 분	20건이상	20건미만 17건이상	17건미만 14건이상	14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점 수	6.0 (9.0)	5.4 (8.1)	4.8 (7.2)	4.2 (6.3)	3.6 (5.4)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 생략시 괄호의 점수 적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생략(해당점수 실적점수 합산)						
분야별 책임 기술 자	등 급	22	.각 분야별 기술자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 점수의 합 / 참여기술자의 수						
			5	자 격 : 해당분야 기술자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5.0		4.0	3.0	2.0			
	경 력	8	.사업책임기술자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계	8.0	7.2	6.4	5.6	4.8	
	실 적	9	.사업책임기술자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자 등급	8	.분야별 기술자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 점수의 합 / 참여기술자의 수					
		2	.자 격 : 해당분야 기술자					
	경력	3	.사업책임기술자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실적	3	.사업책임기술자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교육훈련	2					
			1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전차용역 책임기술자가 금차용역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 전차용역 분야책임기술자가 금차용역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해당용역의 중요 1개분야로 제한하며 공고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 분야, 특별한 경우 변경 가능)					
		구 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책임기술자	0.5	0.4	0.3			
		분야별 책임기술자	0.5	0.4	0.3			
		- 점수 = 배점×(참여기간/과업기간)×100						
* 2개 이상 용역을 통합한 경우 지분을 적용 평가 - 점수 x 용역비율(해당기술자 참여용역 비율/전체 용역)								
※ 실시설계로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0”점 처리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용역업자	15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용역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용역 100% 폐수(하수)처리장 용역 60%(단, 마을하수처리장은 제외)							
			실 적	7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 적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금 액	7								
			실 적 금 액	50억원 이상	50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0억원이상	30억원미만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전 차 용 역 수 행 실적	1	.참여업체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용역완료후 10년이상			
			점 수	1.0	0.8	0.6	0			
- 점수 = 배점×전차용역참여지분율×당해용역참여지분율×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2개이상 용역을 통합한 경우 지분율 적용 평가 - 점수 x 용역비율(해당용역 비율/전체 용역) ※ 실시설계로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0”점 처리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별점	10							
		7	.용역업자 :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건설기술자 :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누계평균 별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 점	-0.2	-0.5	-1.0	-2.0	-3.0	-5.0	
	재 정 상 태 건 실 도	3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 사 채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2-이상	A2- 미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 업 신 용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15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배 점 (건당)	경 과 기 간 가 중 치					
				5년 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신 기 술	1.0	-	-	-			
		특 허	0.6	100%	80%	60%			
	실 용 신 안	0.3	100%	8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투 자 실 적	10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 수	10	9	8	7	6
	활 용 실 적	3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중첩도		10	<p>·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용역의 과업기간 합산</p> <p>- 평가대상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용역이 해당됨.</p> <p>-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용역,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은 미합산한다.</p> <p>· 각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아래 예시 3개항 중 1개항을 선택하여 공고시 제시</p> <p>- 단,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평가기준은 동일하여야 함.</p> <p>(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①</th> <th>②</th> <th>③</th> <th>④</th> <th>⑤</th> </tr> </thead> <tbody> <tr> <td>I</td> <td>150% 미만</td> <td>150~200% 미만</td> <td>200~250% 미만</td> <td>250~300% 미만</td> <td>300% 이상</td> </tr> <tr> <td>II</td> <td>200% 미만</td> <td>200~300% 미만</td> <td>300~400% 미만</td> <td>400~500% 미만</td> <td>500% 이상</td> </tr> <tr> <td>III</td> <td>300% 미만</td> <td>300~350% 미만</td> <td>350~400% 미만</td> <td>400~450% 미만</td> <td>450%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①	②	③	④	⑤	I	150% 미만	150~200% 미만	200~250% 미만	250~300% 미만	300% 이상	II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III	300% 미만	300~350% 미만	350~400% 미만	400~450% 미만	450% 이상
		구 분	①	②	③	④	⑤																				
		I	150% 미만	150~200% 미만	200~250% 미만	250~300% 미만	300% 이상																				
		II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III	300% 미만	300~350% 미만	350~400% 미만	400~450% 미만	450% 이상																				
		4	<p>· 평 가 :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각 1인</p> <p>· 방 법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 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p> <p>※ 용역중복기간 산정은 당해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용역의 용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p> <p>ex) 당해용역 24개월, 수행중인용역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용역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p> <p>· 사업책임기술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200% 미만</th> <th>200~300% 미만</th> <th>300~400% 미만</th> <th>400~500% 미만</th> <th>50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body> </table>	구 분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구 분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6	<p>·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200% 미만</th> <th>200~300% 미만</th> <th>300~400% 미만</th> <th>400~500% 미만</th> <th>50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구 분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구 분	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가점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첨부 1>

책임기술자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Ⅲ.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67호(2017. 12. 20)]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다만, 입찰공고일 직전 1개월 이내 준공용역은 발주청 경력확인증명서도 인정하며, 이 경우 2014. 5.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은 반드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용역 수행 중 등재한 경우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전차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 경력·실적, 용역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 나.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해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단, 전체 백분율의 $\pm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각각의 공동도급자는 기술자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 공동도급시 지역용역회사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용역회사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 중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참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평가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당됨)

(예시) 평가인원 11명, A사 70%, B사 30%

- A사(60%~80%) = 6.6명~8.8명 ≒ 7명~9명

- A사(20%~40%) = 2.2명~4.4명 ≒ 2명~4명

8.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나 설계보상대상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여,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발주청의 확인 별도 첨부 - 미첨부시 인정 안됨)

9. 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자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평가대상 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점수에 적용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90일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90일이상 180일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180일 이상 : 1.0

10.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가능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2.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평가항목에 한함)

IV.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단,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상대평가)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자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text{개월}/12\text{개월}) \times 1\text{건}$ 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만 인정한다. 단 반드시 당해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참여기술자 실적, 업체 유사용역 실적평가지 '14.5.23. 이후 계약 용역 중 실제 준공이 되지 않은 용역을 준공된 것으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평가항목(사업책임 18점, 분야별 책임 22점, 분야별 참여 8점, 용역업자 15점)을 "0점" 처리한다

6.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전차용역은 참여기술자 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 실적 적용범위를 적용하지 않음 (○○분야 설계 실적평가지 2억원 이상만 인정하는 경우 전단계 용역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전차로 인정)

7.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1.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9.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40% 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2.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 가.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참고사항】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3) 건축시공 5) 건축품질관리	2) 건축기계설비 4) 실내건축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3) 가스	2) 소방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3) 건설마케팅	2) 건설기획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외건설협회장(인)		
발주처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발주처					
공사명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여수시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적격 용역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과업 개요

1) 과업내용

-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진두마을 등 23개소 일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비 : 465,53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격 : A4(10절)
- 지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 공판
- 제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6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4부는 별권으로 작성)

3) 제출장소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라.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마. 참여 및 평가인원

1)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 1인(상하수도)

.분야별 기술자 : 4인

- 분야별 인원 : 2인(책임기술자 각1인 포함)

- 해 당 분 야 :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2) 평가대상 기술자 : 5인

.사업책임기술자 :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분야별참여기술자 :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도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I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참고서식 >

가. 표 지 - 양식 1

여수시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수 립 용 역	여수시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19. . .
○ (주) ○ ○ ○ ○ ○ ○ ○ ○ ○ ○ (주) ○		(주) ○○○○○○○○ ○○○○○○○○○ (주)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참여확약서 - 양식 2

본인은 여수시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 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발주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첨 부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공동수급협정서 1부.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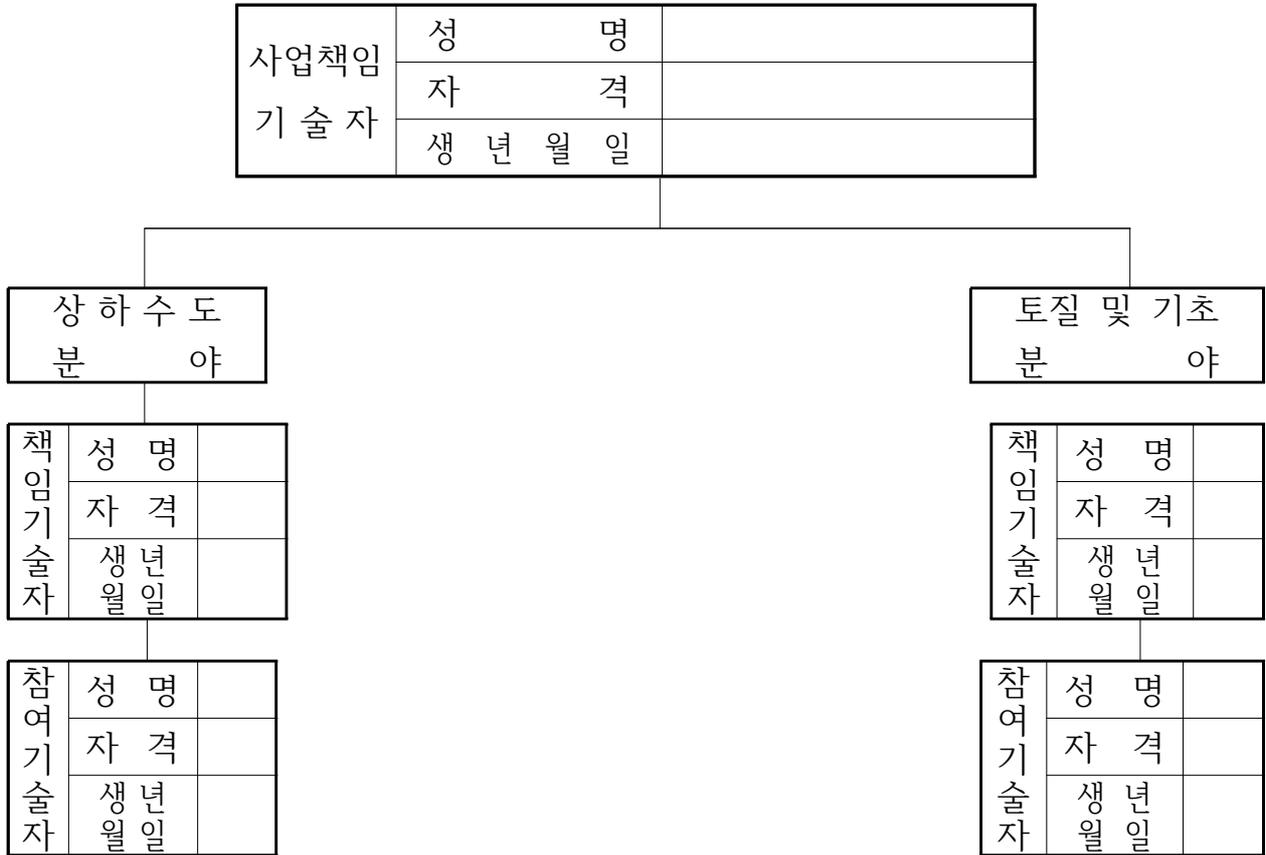
2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여수시청 귀하

다. 과업 참여기술자 조직 - 양식 3



○ 참여기술자의 범위 및 자격

- 사업책임기술자 (1인) : 상하수도
-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 :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 :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 ※ 1.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전체 백분율의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공동도급자는 기술자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2. 참여지분율에 따른 참여인원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조정
3. 공동도급시 지역용역회사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용역회사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 중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참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분야별 책임기술자 평가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당됨)

라.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 양식 4

1) 개인별 총괄표 (양식 4-1)

구분	성명	연령	최종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자격증	등록번호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참여 기술자									

(주)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사본을 첨부
- .경력란에는 책임기술자별로 양식 4-2-①항의 해당분야 경력기간 기재
- .실적란은 양식 4-2-②항의 최근 10년간 수행한 해당용역의 건수를 기재
- .상기 난에 기재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본 평가서 내용대로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양식 4-2)

○ ○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졸 업 년 월 일		기 술 자 등 급			
	자격증(분야 및 종류)			등록번호		취 득 일		
	① 해 당 분 야 경 력		일 (년 월)	② 해당용역 실적건수		건		
실 적 사 실 향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참여기간	비 율 (참여기간/ 계약기간)	발주청	비 고
				년월 ~ 년월(일)	년월 ~ 년월(일))			

(주)

- . 개인별로 작성, 연차순으로 기재하되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사항은 평가기준에 의거 총경력 ①을 명기하되, 연월일을 중복 기재하지 말 것
- . 해당용역 참여건수②는 평가기준에 의거 단일 용역사업 중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종류별로 명기
- . 기술자 자격취득 증빙서류 첨부
- . 참여기간은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을 명기
- . 참여기술자는 용역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 . 실적 증명서 첨부

3)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양식 4-3)

참여기술자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주)	교육훈련기관	업체명

(주)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4) 참여기술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양식 4-4)

분야	성명	용역명	용역 개요	참여기간 (단위:월)	전차용역 참여형태	기술자 등급	비고

(주)

-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된 실적으로 해당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자명단 원본 첨부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 양식 5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등

(단위 : 백만원)

연 도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 주 청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계	건						

2) 실시설계

(단위 : 백만원)

연 도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 주 청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계	건						

(주)

- 평가기준에 의거 준공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 기관, 전문기관 발행 준공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실적증명서 첨부
- 공동도급인 경우는 준공금액란에 총 금액()과 해당회사 지분율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해당회사의 금액을 합산 집계
 -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하도급 : 발주처,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처 승인서 사본 첨부
- 턴키, 대안입찰, 민간투자사업의 설계용역 수행실적 인정
 - 「낙찰금액×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범위내
 - 단, 해당용역업체의 참여지분율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낙찰금액, 참여지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바. 신 용 도 - 양식 6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벌점 (양식 6-1)

○ 용역업자

회 사 명	제재기관	제재사유	용 역 명	입찰참가 제한기간 (개월)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비 고
계						

○ 참여기술자

참 여 기 술 자			용 역 명	제재기관	제재사유	기술자격 정지기간 (개월)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분야	성 명	참여기간					
계							

○ 벌점

구 분	회 사 명 (기술자명)	누계평균 벌점	비고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 과징금이 있을 경우 별도 표시

2)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6-2)

○ 업체현황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주)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양식 7

1) 개발실적

구 분	건 명	기술종류	내 용	유효기간	등록권자	참여지분율
신 기 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주)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만 인정(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2)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① 20	② 20	③ 20	평 균 ①+②+③/3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주) .최근 3년간 건설부문의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3) 활용실적

구 분	활용실적 명칭	활용건수 (단위 : 건)	활용금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신 기술				
특 허				
실용신안				

(주) 지정된 기관의 건설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신기술 : 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 특허 및 실용신안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기관

아. 업무중복도 -

양식 8

구 분	성 명	용역명	사업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중첩기간 (개월)	발주처	사업참여기간		
								참여 분야	성명	참여 기간
사업책임 기술자										

(주)

- .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
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 기재
-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대상용역 전체 기재
- . 계약서, 착수(착공)계 등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실수 또는 고의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양식 9

회사명	신규 고용인원(명)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지분율(%)	비 고

(주)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필요

-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여수시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용역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19. . .

※ 업체명 표기 금지

1. 기술능력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 업 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 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양식 11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합계		100			
가. 참여기술자		50.0			
	사업책임기술자	18.0	작성제외		
	등급	4.0			
	경력	5.0			
	실적	6.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			
	분야별책임기술자	22.0			
	등급	5.0			
	경력	8.0			
	실적	9.0			
	분야별참여기술자	8.0			
	등급	2.0			
	경력	3.0			
	실적	3.0			
	교육훈련, 전차용역	2.0			
	교육훈련	1.0			
	전차용역	1.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업자	15.0			
다. 신용도		10.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벌점	7.0			
	재정상태 건실도	3.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			
	개발실적	2.0			
	투자실적 활용실적	10.0 3.0			
마. 업무중복도		10.0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4.0 6.0			
바.가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도시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 토지 보상협의계획 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여수시 무선산공원 도시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협의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4.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무선산공원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보상협의대상 : 여수시 무선산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 토지

2. 열람공고기간 : 2019. 2. 18. ~ 3. 5. (15일간)

3. 열람방법 : 협의보상대상 토지조서는 여수시 게시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게재

4. 보상협의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협의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가격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6. 기 타 : 보상협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원과(☎061-659-4622)로 문의바랍니다.

무선산공원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협의사유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보상협의 면적 (㎡)	공유지 분	소유자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합계		필지(개)			0				
		면적(㎡)			430,455				
1	죽림리	1		전	344			김*국	여수시 소라면 화산4길 **
2	죽림리	2		전	588			김*권	전남 여수시 미평동 **
3	죽림리	2-1		전	228			정*엽	여수시 도원로 ** (안산동)
								공*순	서울 강동구 동남로87길 ** (고덕동)
								공*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 (별내동)
								공*례	여수시 소라면 복촌1길 **
								공*식	여수시 도원로 ** (안산동)
								공*임	여수시 도원로 ** (안산동)
								공*엽	서울 종량구 면목로 45길 ** (면목동)
		공*식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호평동, 호평파라곤)						
4	죽림리	2-2		전	539			강*원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
								정*옥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
5	죽림리	2-3		전	2,463			서*수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
6	죽림리	2-4		전	390			정*옥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
7	죽림리	2-5		전				박*성	경기도 부천시 까치로 20번길 ** (작동)

					1,433			박*렬	서울 도봉구 방학로 11길 ** (방학동, 효성하이타운)
								박*상	경기도 김포시 곁포1로 ** (곁포동, 오스타파라곤)
8	죽림리	2-6		전	102			정*엽	전남 여수시 도원로 ** (안산동)
								공*순	서울 강동구 동남로87길 ** (고덕동)
								공*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 (별내동)
								공*례	여수시 소라면 북촌1길 **
								공*식	여수시 도원로 ** (안산동)
								공*임	여수시 도원로 ** (안산동)
								공*엽	서울 종랑구 면목로 45길 ** (면목동)
								공*식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65, ** (호평동, **)
								9	죽림리
10	죽림리	4		전	69			이*오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295번길4,** (옥동,금오그린@)
11	죽림리	5		답	1,559			임*석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
12	죽림리	6		전	1,603			이*창	여수시 소호로 ** (안산동)
13	죽림리	6-1		전	2,569			정*균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4	죽림리	7		전	988			윤*숙	순천시 옥천1길 3, **
								윤*만	여수시 소호로 649, ** (안산동, 부영@)
15	죽림리	8-1		전	693			정*옥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
16	죽림리	14-1		임	16,184			임*석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
17	죽림리	14-2		임	380			정*조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2길 **
18	죽림리	33		답	798			김*현	여수시 박람회길 61, **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19	죽림리	35		전	206			안*를	
20	죽림리	36		답	499			나*운	여수시 안산3길 ** (안산동)
21	죽림리	37		전	463			신*식	전남 여수시 도원로 ** (선원동)
22	죽림리	38		답	367			한*숙	여수시 신월2길 11, ** (신월동, 코아루@)
23	죽림리	39		전	249			박*혜	여수시 시청로 84, ** (선원동, 금호타운)
24	죽림리	40		답	2,505			마*현	여수시 쌍봉로 316, ** (둔덕동, 한려@)
25	죽림리	41		답	256			박*혜	여수시 시청로 84, ** (선원동, 금호타운)
26	죽림리	45-3		임	3,023			심*덕	여수시 고소5길 74, ** (고소동, 한신@)
								심*연	전북 군산시 영명길 ** (구암동)
								김*숙	여수시 오림5길 36-1, ** (오림동)
								김*연	여수시 선원4길 67, ** (선원동, 우미이노스빌)
27	죽림리	산53		임	8,677			서*인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28	죽림리	산54		임	8,536			신*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길 45, ** (제동별장빌라)
29	죽림리	산55-1		임	8,980			서*선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21번길 15, ** (당동, 용호마을e-편한세상)
30	죽림리	산55-3		임	4,278			서*선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21번길 15, ** (당동, 용호마을e-편한세상)
31	죽림리	산58		임	1,091			서*인	전남 여수시 화장동 **
32	죽림리	산59		임	5,058			달성서씨***파 화산**중중	전남 여수시 쌍봉면 화장리 **
33	죽림리	산60		임	7,736			공*택	광주 광산구 신가삼효로** (신가동)
34	죽림리	산61		임				김*	전남 여수시 서교동 **

					10,017			정*균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
35	죽림리	산61-2		임	2,380			안*권	경남 거제시 아주1로 2길 ** (아주동)
36	죽림리	산62		임	3,804			정*주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5, ** (당동, 용호마을엘지@)
37	죽림리	산63-2		임	11,587			최*정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2로 ** (삼룡동)
38	죽림리	산63-3		임	6,712			주*식	여수시 신기북3길 ** (신기동)
39	죽림리	산63-4		임	4,777			김*수	여수시 시청서2길 ** (학동)
40	죽림리	산64		임	15,441			최*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1-1 (16/4) 우성아파트**
41	죽림리	산65		임	404			황*득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42	죽림리	산66		임	1,112			김*표	여수시 소라면 덕양삼거리길 **
43	죽림리	산73		임	21,521			공*영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
44	죽림리	380		전	89			김*훈	여수시여문2로61,**(문수동,부영@)
45	죽림리	380-3		전	92			안*규	서울 강서구 허준로 47, ** (가양동, 가양2단지성지@)
46	죽림리	380-4		전	134			백*경	여수시 충민공원길 9, ** (덕충동, 태창@)
47	죽림리	381		전	1,031			공*식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48	죽림리	382		전	972			정*두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
49	죽림리	382-1		전	2,519			김*국	전남 여수시 소라면 화산4길 **
50	죽림리	383		전	860			서*석	여수시 화산로** (화장동)
51	죽림리	384		전				서*석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132				
52	죽림리	385		전	504			서*수	여수시 화산로** (화장동)
53	죽림리	386		전	519			공*식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
54	죽림리	430		전	815			김*현	여수시미평남4길**(미평동)
55	죽림리	431-2		전	218			정*호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39, ** (수**트빌@)
56	화장동	산109-1		임	4,077			서*석	전남 여수시 화장동 **
57	화장동	산110-1		임	10,659			황*선	여수시 좌수영로** (광무동)
								조*심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41, ** (오림동)
58	화장동	산110-3		임	2,204			서*표	광주광산구하남대로261번길27,** (신가동,수완진아리채1차@)
59	화장동	산110-5		임	2,862			박*엽	여수시 안산5길 ** (안산동)
60	화장동	산110-6		임	661			황*선	여수시 좌수영로 ** (광무동)
								조*심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41,** (오림동)
61	화장동	산111		임	1,388			정*숙	여수시 소라면 흑산길 **
62	화장동	산112		임	23,207			정*자	여수시 무선7길 ** (선원동)
63	화장동	산113		임	165			박*규	여수시 선원5길** (선원동)
64	화장동	산114		임	5,355			박*순	여수시 성산6길** (화장동)
65	화장동	산115		임	7,140			박*규	전남 여수시 선원리 **
66	화장동	산116		임	8,529			박*윤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60번길 *,** (호평동)
								박*관	여수시 선원5길 ** (선원동)
67	화장동	산117-3		임	7,108			김*숙	여수시 신기북3길 ** (신기동)

68	화장동	산117-4		임	330			임*호	여수시 양지1길 5, ** (미평동, 선경@)
69	화장동	산118		임	8,430			김*수	전남 여수시 쌍봉면 선원리 **
70	화장동	산122		임	7,494			서*수	전남목포시삼학로376-1, ** (용해동, 라이프2차@)
								서*수	서울 종로구 동숭4가길 15, ** (동숭동, ***위트빌)
								서*열	여수시 장군산길 42, ** (오림동, 부영@)
71	화장동	산123		임	397			김*각	전남 여수시 안산리
72	화장동	산124		임	5,043			서*수	전남목포시삼학로376-1, ** (용해동, 라이프2차@)
								서*수	서울 종로구 동숭4가길 15, ** (동숭동, 대보스위트빌)
								서*열	여수시 장군산길 42, ** (오림동, 부영@)
73	화장동	산125		임	10,264			정*엽	여수시 무선2길 39,** (화장동, 주공@)
74	화장동	산126		임	15,174			서*수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75	화장동	산135-1		임	6,471			정*호	전남 여수시 선원동 **
76	화장동	산136-1		임	6,986			김*훈	전남 여수시 종화동 **
77	화장동	산140-1		임	9,992			장*익	여수시 성산6길** (화장동)
78	화장동	산146		임	19,188			양*승	여수시 선원동 **
79	화장동	513-3		전	676			서*례	서울시양천구월정로9길20,** (신월동,양천벽산블루밍2단지)
80	화장동	527-1		답	31			윤*환	경기도시흥시하상로36,** (하산동,연꽃마을금호타운)
81	화장동	529		답	1,653			박*례	여수시 여문2로 54-26, ** (문수동, 코아루수@)
82	화장동	547-1		전	181			최*홍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12번길** (괘법동)

83	화장동	551		답	238			서*호	여수시 무선3길 18, ** (선원동, 남양@)
84	화장동	552-2		답	331			정*심	여수시 미평로** (미평동)
85	화장동	552-3		전	496			오*순	여수시 화장동 **
86	화장동	552-4		전	397			박*춘	광주시 남구 천변좌로 542번길** (방림동)
87	화장동	554		답	2,631			정*자	여수시 무선7길 ** (선원동)
88	선원동	산25		임	4,186			박*철	여수시 선원동 **
89	선원동	산27		임	3,890			박*수	여수시 화산로** (화장동)
90	선원동	산28		임	397			윤*례	전남여수시선원동1256 남양아파트**
91	선원동	산36		임	9,763			김*환	여수시 안산리 **
								김*수	여수시 안산리 **
92	선원동	산38		임	1,009			박*식	여수시 선원7길 ** (선원동)
93	선원동	산39		임	1,198			박*규	여수시 성산로 ** (화장동)
94	선원동	산40		임	2,812			박*렬	여수시 선원동 **
95	선원동	산41		임	1,983			박*규	여수시 무선로 50, ** (학동, 신동아파밀리에)
96	선원동	산42-2		임	9,500			박*환	제주특별시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
97	선원동	산42-3		임	11,316			박*철	전남 여수시 선원동**
98	선원동	산43		임	4,729			박*봉	여수시 선원4길** (선원동)
99	선원동	산43-2		임	4,593			박*규	여수시 성산로 ** (화장동)

100	선원동	산44		임	1,289			문*완	여수시 신기북7길 60,** (신기동 주공@)
101	선원동	산45		임	298			김*언	전남 여수시 안산리
102	선원동	산57-2		임	1,859			김*일	여수시 좌수영로 205,** (광무동, 럭커광무@)
103	선원동	산57-3		임	397			김해***현파 안산동심***종중	전남 여수시 안산동**
104	선원동	산57-4		임	298			박*돌	전남 여수시 선원동 **
105	선원동	산57-5		임	298			김해**삼현파 안산동***락종중	전남 여수시 안산동 **
106	선원동	산58		임	298			김*순	여수시 구봉산길** (국동)
107	선원동	산61		임	5,244			박*규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가길 17,** (불광동)
108	선원동	산61-5		임	1,976			유*정	인천광역시연수구컨벤시아대로130번길58,** (송도동, 송도자이하이버뷰1단지)
								유*영	서울용산구한강대로26,** (한강로3가, 한강대우트림프월드3차)
109	선원동	산68		임	62			김*영	
110	선원동	산68-1		임	37			김*영	
111	선원동	산72		임	8,852			임*환	여수시 해산3길 ** (화치동)
112	선원동	955		답	618			문*찬	순천시 조례못등길 5, ** (조례동, 동신@)
113	선원동	958-2		전	850			박*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114	선원동	986		답	724			박*규	전남 여수시 선원동 **
115	선원동	987-1		전	2,176			박*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28번길 ** (세류동)
116	선원동	987-6		임	1,011			김*훈	삼곡길 ** (안산동)

117	선원동	987-7		임	330			이*화	여수시 심곡길 ** (안산동)
118	선원동	990		답	2,199			박*수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119	선원동	990-2		답	1,897			박*숙	부산시북구화명신도시로244,** (금곡동,화명리버빌2차@)
120	선원동	991		답	595			박*일	여수시 선산로 ** (화장동)
121	선원동	995-1		답	681			박*욱	여수시 성산5길 ** (화장동)
122	선원동	995-2		답	760			이*형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
								김*균	여수시 선원7길 ** (선원동)
								주*금	여수시 선원동**
123	선원동	996		답	397			박*래	전남 여수시 선원동 **
124	선원동	997		답	1,289			박*래	전남 여수시 선원동 **
125	선원동	998		답	165			박*래	전남 여수시 선원동 **
126	선원동	999-4		전	318			오*택	전남 여수시 신월동 **
127	선원동	1002		답	1,163			박*하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7번길 ** (중흥동)
128	선원동	1003		전	333			박*하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7번길 ** (중흥동)

미평동 20통장 모집 공고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평동 20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1명(미평동 20통장 : 미평동행정복지센터, 미평 제2공원, 양지주유소, 빌라촌)
2. 접수기간 : 2019. 02. 14.(목) ~ 2019. 02. 21.(목)[8일간]
3. 접수장소 : 미평동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접수)
4.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들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결격대상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민·형사상 사건에 소추되어 조사 중인 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선정방법 : 선정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임명
7. 제출서류
 -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
 - 주요경력 및 증빙서류(자원봉사실적, 수상내역 등) 각 1부
 -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자대표회의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
 -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
8. 임 기 : 2019. 03. 12. ~ 2021. 03. 11.(2년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미평동행정복지센터(☎ 65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람 중 1명을 통장으로 임명
-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사람 중에서 1명을 통장으로 임명

2019년 월 일

미 평 동 장

2019년 제1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 월 14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규칙 제701호

붙임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 701 호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복지관의 복지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노인들에 대한 이동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배차신청) ①·② (생략)	제23조(배차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괄부서의 장애인에게 사전합의를 받 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 용도 이외에는 배차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31)	③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노인복지관의 복지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노인들에 대한 이동지원</u>

2019년 제1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 월 14 일

여 수 시 장 권 오 영



여수시 규칙 제702호

붙임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고충민원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의견이나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및 질문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은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권리보호요청

제9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1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12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통지(통보)서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 18호 서식에 따른 의견조회(자료요청)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정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제5항에 따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1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4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15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2호 서식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조사기간연장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기간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9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 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 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산세의 감면)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 등)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 수 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〇〇.〇〇.〇〇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여 수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 약)				
00과 의 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충내용				
요구자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여 수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 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m²)

여 수 시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 사유				

끝.

여 수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여 수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여 수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제5항)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시·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시·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분납기한 및 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2회			
3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J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여 수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 의견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처리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체납처분유예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여부 의견		
승인(기각)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여 수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 결과 통보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 유예(체납처분유예)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된 세목과 세액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